

2025년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운영하는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서울 새활용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I. 모집 개요

- **모집대상:** 새활용 · 재활용 및 도시문제해결 분야 우수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2025. 4. 28.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관분야 스타트업

*2018. 4. 28. 이후 사업을 개시한 스타트업

-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가점 기준에 따라 도시문제해결 및 ESG 분야 우수기업 등 우대
→ 대면평가 가점 1점 부여
- 신청기업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제한 없음
- 최종선정 기업은 입주개시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입주 공간으로 이전해야 함
※단, 해외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하단의 참고 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새활용창업지원센터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서울시 8대 창업지원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성수/창동/마곡M+, AI양재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새활용창업지원센터) 독립공간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
※ 서울시 8대 창업지원센터의 경우 과거에도 입주 후 퇴거하였다(현재 입주중이 아니어도) 입주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입주 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지면 입주선정취소 및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모집규모:** 7개사 내외

- **입주기간:** 2025년 6월 ~ 2026년 6월(예정)

- 계약일로부터 1년*

※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

※ 서울시 정책변경 및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시기:** 2025년 6월 중

- 최종선정 이후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설(공간) 및 시기 확정 후 계약체결

□ 시설개요

구 분	소재지	시설규모	m ² 당 이용료 (월, VAT별도)
서울새활용 창업지원센터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2인실(15m ²) ▶ 4인실(25m ²) 총 7개실	선발기업 개별안내

*임대료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며, 입주계약 시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납입

- 선정 이후 입주협상 결과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적·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시점 4대 보험 가입 직원 수 기준으로 입주 공간 제공
 - ※ 4대 보험 가입 직원 수가 동일한 경우 대면평가 고득점 기업 순으로 우선권 제공
- 서울특별시 창업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료는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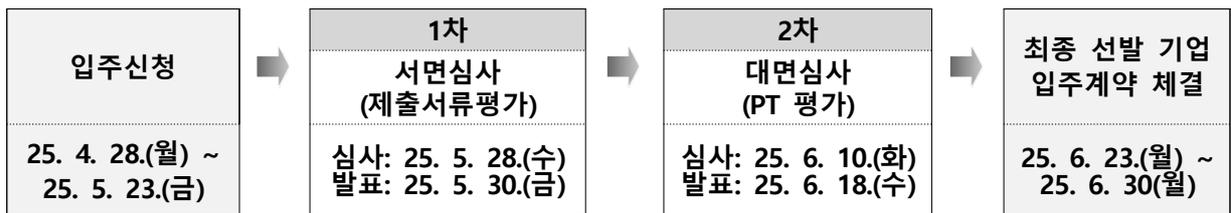
II.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페이지(스타트업플러스) 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 스타트업플러스 웹페이지 접속(www.startup-plus.kr) ▶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등 첨부파일 송부 ▶ 신청완료

□ 신청기한: 2025. 5. 23.(금) 18:00까지

□ 선발절차



□ 제출서류

- 첨부자료
 - 입주지원서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최소 10p 최대 30p 이내 자유 양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직전연도 재무제표 1부 (1년 미만 창업기업 면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1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면제)
 - IR 자료(해당자 제출)
 -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 1차 선발결과: 스타트업 플러스 공지, 2025. 5. 30.(금) 예정

□ 평가기준

1차 평가항목(서면)	2차 평가항목(대면)
사업계획 적정성 (20)	수행역량 (20)
시장성 (30)	사업성 (30)
공공성 (20)	경쟁력 (20)
성장 가능성 (30)	투자유치 가능성 (30)
가점 (최대 5점)	

○ 서면평가 가점항목

- 특허산업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1점).
(다만,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1점)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1점)
- 여성(1점)
- 장애인(1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1점)
-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환경기술 성능확인” 등 환경부 인증 성능확인서 보유자(1점)

III. 유의사항 및 문의처

- 본 공고의 접수절차 미 준수 시 사업 참가 신청 불인정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이메일 : sup@kmac.co.kr
 - 전 화 :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기업지원단(02-6956-1874)

<참고 :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순번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안),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안),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안),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 신청일 기준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